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821, 2823)

2025. 0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2821, 2823

I. 결산안 개요

1. 제출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5. 05. 26.

다. 회부일 : 2025. 05. 29.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6,686,539백만원

○ 징수결정액 : 6,605,431백만원

○ 실제수납액 : 6,598,122백만원

○ 미수납액 : 7,295백만원

○ 결손처분 : 14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9%(전년도 99.9%)임.

<표> 2024년도 복지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6,686,539	6,605,431	6,598,122	14	7,295	99.9%
일반회계	4,885,623	4,805,134	4,797,962	14	7,158	99.9%
200 세외수입	84,046	110,231	103,074	14	7,143	93.5%
210 경상적세외수입	11,754	14,466	14,068	0	398	98.7%
211 재산임대수입	633	1,463	1,463	0	0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633	1,463	1,463	0	0	100.0%
212 사용료수입	77	81	81	0	0	100.0%
212-08 주차요금수입	68	71	71	0	0	100.0%
212-08 기타사용료	9	10	10	0	0	100.0%
213 수수료수입	42	51	47	0	4	92.2%
213-01 증지수입	42	51	47	0	4	92.2%
214 사업수입	9,938	10,268	9,939	0	329	98.9%
214-09 기타사업수입	9,938	10,268	9,939	0	329	98.9%
216 이자수입	1,063	2,603	2,538	0	64	97.5%
216-06 기타이자수입	1,063	2,603	2,538	0	64	97.5%
220 임시적세외수입	75,308	98,900	92,005	14	6,881	93.3%
221 재산매각수입	43	66	64	0	1	97.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43	66	64	0	1	97.0%
223 보조금반환수입	62,760	78,528	76,429	0	2,100	97.4%
223-01 시·도비반환금수입	49,031	70,365	68,493	0	1,872	97.4%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9,633	5,941	5,714	0	227	97.3%
223-03 위탁비반환수입	4,097	2,222	2,222	0	0	100.0%
224 기타수입	5,811	10,381	10,362	0	19	99.8%
224-07 그외수입	5,811	10,381	10,362	0	19	99.8%
225 지난연도수입	3,673	6,829	2,120	14	4,695	31.0%
225-01 지난연도수입	3,673	6,829	2,120	14	4,695	31.0%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5	167	100	0	67	59.9%
233 변상금	5	6	1	0	4	16.7%
233-01 변상금	5	6	1	0	4	16.7%
235 환수금	0	162	99	0	63	61.1%
235-01 부정이익환수금	0	162	99	0	63	61.1%
300 지방교부세	123	0	0	0	0	0.0%
310 지방교부세	123	0	0	0	0	0.0%
311 지방교부세	123	0	0	0	0	0.0%
311-02 특별교부세	123	0	0	0	0	0.0%
500 보조금	4,792,130	4,685,063	4,685,063	0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4,792,130	4,685,063	4,685,063	0	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4,792,130	4,685,063	4,685,063	0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4,736,622	4,629,653	4,629,653	0	0	10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412	45,315	45,315	0	0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511-03 기금	10,096	10,096	10,096	0	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24	9,840	9,825	0	15	99.8%
	710 보전수입등	9,301	9,481	9,481	0	0	100.0%
	712 전년도이월금	9,301	9,481	9,481	0	0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301	9,481	9,481	0	0	100.0%
	713 용자금원금수입	23	16	16	0	0	100.0%
	713-01 민간용자금회수수입	23	16	16	0	0	100.0%
	715 보조금등 반환금	0	342	327	0	15	99.4%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342	327	0	15	99.4%
	균형발전특별회계	10,552	10,552	10,552	-	-	100%
500	보조금	10,552	10,552	10,552	-	-	100%
	510 국고보조금등	10,552	10,552	10,552	-	-	100%
	511 국고보조금등	10,552	10,552	10,552	-	-	1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52	10,552	10,552	-	-	100%
	의료급여특별회계	1,790,364	1,789,745	1,789,608	-	137	99%
200	세외수입	4,602	3,983	3,846	-	137	96%
	210 정상적세외수입	1,587	848	848	0	0	100.0%
	216 이자수입	1,587	848	848	0	0	1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587	848	848	0	0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016	3,135	2,998	0	137	101.8%
	224 기타수입	2,376	2,634	2,634	0	0	107.3%
	224-07 그외수입	2,376	2,634	2,634	0	0	107.3%
	225 지난연도수입	0	207	70	0	137	33.8%
	225-01 지난연도수입	0	207	70	0	137	33.8%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640	294	294	0	0	100.0%
	231 과징금	640	294	294	0	0	100.0%
	231-01 과징금	640	294	294	0	0	100.0%
500	보조금	790,312	790,312	790,312	-	-	100%
	510 국고보조금등	790,312	790,312	790,312	-	-	100%
	511 국고보조금등	790,312	790,312	790,312	-	-	100%
	511-01 국고보조금	790,312	790,312	790,312	-	-	1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5,450	995,450	995,450	-	-	100%
	710 보전수입등	205,874	205,874	205,874	0	0	100.0%
	711 잉여금	205,874	205,874	205,874	0	0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205,874	205,874	205,874	0	0	100.0%
	720 내부거래	789,576	789,576	789,576	0	0	100.0%
	721 전입금	789,576	789,576	789,576	0	0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89,576	789,576	789,576	0	0	100.0%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10,708,676백만원

○ 예산증감 : 810,936백만원

○ 예산현액 : 10,507,434백만원

○ 지 출 액 : 10,265,338백만원

○ 이 월 액 : 6,727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16,040백만원

○ 불 용 액 : 219,329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1%(전년도 5.2%)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19,329	68,115	-	107,931	95	43,188	-

<표> 2024년도 복지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 -C-D)	불용률
복지실 합계	10,507,434	10,265,338	6,727	16,040	219,329	2.1%
일반회계 소계	8,701,140	8,480,426	6,727	15,956	198,031	2.3%
복지정책과	2,496,567	2,453,316	18	7,240	35,993	1.4%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648,097	1,605,018	18	7,240	35,822	2.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154,749	148,478	-	77	6,194	4.0%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405,090	1,371,094	-	7,162	26,834	1.9%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5,636	14,000	18	-	1,618	10.3%
만민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72,623	71,447	-	-	1,176	1.6%
행정운영경비(복지실 복지정책과)	428	394	-	-	34	8.0%
기본경비	313	279	-	-	34	10.8%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115	114	-	-	-	0.4%
일반예산(재무활동)	848,041	847,904	-	-	137	0.0%
내부거래지출(복지실 복지정책과)	846,669	846,669	-	-	-	0.0%
보전지출(복지실 복지정책과)	1,371	1,235	-	-	137	0.0%
디딤돌소득과	22,821	22,033	-	-	789	3.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22,802	22,013	-	-	789	3.6%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정립	22,802	22,013	-	-	789	3.6%
행정운영경비(복지실 디딤돌소득과)	19	19	-	-	-	0.0%
기본경비	19	19	-	-	-	0.0%
장애인복지과	255,713	240,888	901	5,241	8,683	3.4%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51,758	231,002	901	5,241	8,614	3.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47,107	232,805	901	5,241	8,160	3.3%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4,076	3,622	-	-	454	11.1%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74	574	-	-	-	0.0%
행정운영경비(복지실 장애인복지과)	43	43	-	-	-	0.2%
기본경비	43	43	-	-	-	0.2%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 -C-D)	불용률
일반예산(재무활동)		3,912	3,843	-	-	68	1.7%
	보전지출(복지실 장애인복지과)	3,912	3,843	-	-	68	1.7%
장애인자립지원과		1,302,735	1,259,157	4,970	3,475	35,134	2.7%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1,298,009	1,255,386	4,970	3,475	34,178	2.6%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108,561	106,024	0	446	2,091	1.9%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1,142,802	1,110,089	0	3,025	29,688	2.6%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26,322	19,730	4,194	4	2,394	9.1%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20,323	19,543	775	0	5	0.0%
	재무활동(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4,681	3,726	0	0	956	20.4%
	보전지출(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4,681	3,726	0	0	956	20.4%
	행정운영경비(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45	45	0	0	0	0.0%
	기본경비	45	45	0	0	0	0.0%
자활지원과		295,518	290,371	345	-	4,803	1.6%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72,187	67,051	345	-	4,790	6.6%
	노숙인 자활지원	46,600	43,270	345	-	2,985	6.4%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5,587	23,782	-	-	1,805	7.1%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222,454	222,454	-	-	-	0.0%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222,454	222,454	-	-	-	0.0%
	행정운영경비(복지실 자활지원과)	32	32	-	-	-	0.0%
	기본경비	32	32	-	-	-	0.0%
	일반예산(재무활동)	846	833	-	-	13	1.5%
	보전지출(복지실 자활지원과)	846	833	-	-	13	1.5%
어르신복지과		3,695,091	3,584,340	487	-	110,262	3.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3,694,073	3,583,788	487	-	109,798	2.9%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10,466	8,753	487	-	1,226	11.7%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3,274,111	3,169,255	-	-	104,857	3.2%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2,628	2,628	-	-	-	0.0%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41,246	41,044	-	-	202	0.5%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365,622	362,109	-	-	3,513	0.9%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 -C-D)	불용률
재무활동		63	63	-	-	-	0.0%
	보전지출(복지실 어르신복지과)	63	63	-	-	-	0.0%
	행정운영경비(복지실 어르신복지과)	955	489	-	-	466	48.7%
	기본경비	955	489	-	-	466	48.7%
고독대응과		81,899	81,255	-	-	644	0.8%
	고립은둔위기가구예방발굴및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81,895	81,251	-	-	644	0.8%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8,388	8,386	-	-	3	0.0%
	독거·취약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73,507	72,866	-	-	641	0.9%
	행정운영경비(복지실 고독대응과)	3	3	-	-	0	0.0%
	기본경비	3	3	-	-	0	0.0%
돌봄복지과		544,746	543,064	-	-	1,682	0.3%
	민간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00,329	299,505	-	-	824	0.3%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102,421	101,652	-	-	769	0.8%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3,636	3,634	-	-	2	0.0%
	자립취약계층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194,272	194,219	-	-	53	0.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244,281	243,423	-	-	858	0.4%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44,281	243,423	-	-	858	0.4%
	행정운영경비(복지실 돌봄복지과)	40	40	-	-	0	0.0%
	기본경비	40	40	-	-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96	96	-	-	0	0.0%
	보전지출(복지실 돌봄복지과)	96	96	-	-	0	0.0%
1인가구지원과		6,051	6,003	6	-	42	0.7%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	5,997	5,952	6	-	38	0.6%
	1인가구 안전인프라 구축 및 건강돌봄체계 마련	1,945	1,944	-	-	1	0.1%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4,052	4,009	6	-	37	0.9%
	행정운영경비(복지실 1인가구지원과)	54	51	-	-	3	6.3%
	기본경비	54	51	-	-	3	6.3%
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15,930	15,815	-	84	30	0.2%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 -C-D)	불용률
복지정책과	12,784	12,670	-	84	30	0.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2,784	12,670	-	84	30	0.2%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12,784	12,670	-	84	30	0.2%
돌봄복지과	3,146	3,146	-	-	-	0.0%
민간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업자대 발굴지원	3,146	3,146	-	-	-	0.0%
지역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업자대 발굴 지원 등	3,146	3,146	0	0	0	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계	1,790,364	1,769,097	0	0	21,267	1.2%
복지정책과	1,790,364	1,769,097	0	0	21,267	1.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790,196	1,768,929	0	0	21,267	1.2%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790,196	1,768,929	0	0	21,267	1.2%
일반예산(재무활동)	168	168	0	0	0	0.0%
보전지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8	168	0	0	0	0.0%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33건, 1,738백만원

다. 예산 이체 : 33건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20건, 3,508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17건, 6,727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합계	7,820,441	5,214,977	5,197,077	187	17,767
당해(소계)	7,816,402	5,214,449	5,196,736	-	17,713
일반회계	6,013,422	4,415,682	4,399,045	-	16,637
균형발전특별회계	12,784	8,455	8,371	-	8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90,196	790,312	789,320	-	992
명시이월(소계)	4,039	528	341	187	54
일반회계	4,039	528	341	187	54

3.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4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185,578	△5,249	69,351	74,601	180,33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045	87	673	586	12,132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2,572	△763	2,690	3,453	21,81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9,853	△545	518	1,064	9,308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41,108	△4,028	65,470	69,498	137,080

4. 채권현재액 : 13,324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4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6,532,377 m^2 1,691,774백만원,
 - 건물 364,631 m^2 687,635백만원,
 - 기타 39건 4,937백만원,
- 총 2,384,346백만원 상당의 금액

<표> 2024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구분	2023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4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계	2,280,356	103,990	-	2,384,346	
행정 재산	계	2,278,582	88,340	-	2,366,922
	공용재산	1,259,225	43,984	-	1,303,209
	공공용재산	1,011,432	44,115	-	1,055,547
	기업용재산	7,925	241	-	8,166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1,774	15,650	-	17,424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4년도 말 복지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49개, 현재액 67백만원

<표> 2024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23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4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35	-	14	14	-	-	-	49
	금액	50	-	17	17	-	-	-	67
일반회계	수량	35	-	14	14	-	-	-	49
	금액	50	-	17	17	-	-	-	67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

- 2024 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6조 6,865억 3천 9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 6,054억 3천 1백만원임.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6조 5,981억 2천 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2억 9천 5백만원으로, 수납률은 99.9%로 나타남.

<표> 2024년도 복지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6,686,539	6,605,431	6,598,122	14	7,295	99.9%
일반회계	4,885,623	4,805,134	4,797,962	14	7,158	99.9%
200 세외수입	84,046	110,231	103,074	14	7,143	93.5%
210 경상적세외수입	11,754	14,466	14,068	0	398	98.7%
211 재산임대수입	633	1,463	1,463	0	0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633	1,463	1,463	0	0	100.0%
212 사용료수입	77	81	81	0	0	100.0%
212-08 주차요금수입	68	71	71	0	0	100.0%
212-08 기타사용료	9	10	10	0	0	100.0%
213 수수료수입	42	51	47	0	4	92.2%
213-01 증지수입	42	51	47	0	4	92.2%
214 사업수입	9,938	10,268	9,939	0	329	98.9%
214-09 기타사업수입	9,938	10,268	9,939	0	329	98.9%
216 이자수입	1,063	2,603	2,538	0	64	97.5%
216-06 기타이자수입	1,063	2,603	2,538	0	64	97.5%
220 임시적세외수입	75,308	98,900	92,005	14	6,881	93.3%
221 재산매각수입	43	66	64	0	1	97.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43	66	64	0	1	97.0%
223 보조금반환수입	62,760	78,528	76,429	0	2,100	97.4%
223-01 시·도비반환금수입	49,031	70,365	68,493	0	1,872	97.4%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9,633	5,941	5,714	0	227	97.3%
	223-03 위탁비반환수입	4,097	2,222	2,222	0	0	100.0%
	224 기타수입	5,811	10,381	10,362	0	19	99.8%
	224-07 그외수입	5,811	10,381	10,362	0	19	99.8%
	225 지난연도수입	3,673	6,829	2,120	14	4,695	31.0%
	225-01 지난연도수입	3,673	6,829	2,120	14	4,695	31.0%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5	167	100	0	67	59.9%
	233 변상금	5	6	1	0	4	16.7%
	233-01 변상금	5	6	1	0	4	16.7%
	235 환수금	0	162	99	0	63	61.1%
	235-01 부정이익환수금	0	162	99	0	63	61.1%
	300 지방교부세	123	0	0	0	0	0.0%
	310 지방교부세	123	0	0	0	0	0.0%
	311 지방교부세	123	0	0	0	0	0.0%
	311-02 특별교부세	123	0	0	0	0	0.0%
	500 보조금	4,792,130	4,685,063	4,685,063	0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4,792,130	4,685,063	4,685,063	0	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4,792,130	4,685,063	4,685,063	0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4,736,622	4,629,653	4,629,653	0	0	10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412	45,315	45,315	0	0	100.0%
	511-03 기금	10,096	10,096	10,096	0	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24	9,840	9,825	0	15	99.8%
	710 보전수입등	9,301	9,481	9,481	0	0	100.0%
	712 전년도이월금	9,301	9,481	9,481	0	0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301	9,481	9,481	0	0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23	16	16	0	0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3	16	16	0	0	100.0%
	715 보조금등 반환금	0	342	327	0	15	99.4%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342	327	0	15	99.4%
	균형발전특별회계	10,552	10,552	10,552	-	-	100%
	500 보조금	10,552	10,552	10,552	-	-	100%
	510 국고보조금등	10,552	10,552	10,552	-	-	100%
	511 국고보조금등	10,552	10,552	10,552	-	-	1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52	10,552	10,552	-	-	100%
	의료급여특별회계	1,790,364	1,789,745	1,789,608	-	137	99%
	200 세외수입	4,602	3,983	3,846	-	137	96%
	210 경상적세외수입	1,587	848	848	0	0	100.0%
	216 이자수입	1,587	848	848	0	0	1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587	848	848	0	0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016	3,135	2,998	0	137	101.8%
	224 기타수입	2,376	2,634	2,634	0	0	107.3%
	224-07 그외수입	2,376	2,634	2,634	0	0	107.3%
	225 지난연도수입	0	207	70	0	137	33.8%
	225-01 지난연도수입	0	207	70	0	137	33.8%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230 지방행정체제·부담금	640	294	294	0	0	100.0%
231 과징금	640	294	294	0	0	100.0%
231-01 과징금	640	294	294	0	0	100.0%
500보조금	790,312	790,312	790,312	-	-	100%
510국고보조금등	790,312	790,312	790,312	-	-	100%
511 국고보조금등	790,312	790,312	790,312	-	-	100%
511-01 국고보조금	790,312	790,312	790,312	-	-	1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5,450	995,450	995,450	-	-	100%
710 보전수입등	205,874	205,874	205,874	0	0	100.0%
711 잉여금	205,874	205,874	205,874	0	0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205,874	205,874	205,874	0	0	100.0%
720 내부거래	789,576	789,576	789,576	0	0	100.0%
721 전입금	789,576	789,576	789,576	0	0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89,576	789,576	789,576	0	0	100.0%

- 최근 3년간 복지실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높아지는 추세임.

<표> 복지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24	4,885,623	4,805,134	4,797,962	14	7,158	99.9%
2023	4,390,749	4,338,293	4,331,672	0	6,621	99.8%
2022	4,161,352	4,162,446	4,154,905	0	7,540	99.8%

- 복지실 과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예산이 가장 많은 과는 어르신복지과로 총 세입예산액은 2조 9,810억 5천만원이며(수납률 99.9%),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과는 장애인복지과로 전체 징수결정액 622억 2백만원 가운데 26억 8백만원(수납률 95.9%)를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24년도 복지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복지실	4,854,859	4,885,623	4,805,134	4,797,962	14	7,158	99.9%
복지기획관	1,706,640	1,736,214	1,748,841	1,745,738	4	3,099	99.8%
복지정책과	960,974	958,229	948,376	948,340	0	35	100.0%
장애인복지과	55,045	59,237	62,202	59,594	0	2,608	95.9%
장애인자립지원과	535,598	558,097	581,175	580,864	4	307	100.0%
지활지원과	155,022	160,652	157,089	156,940	0	149	99.9%
돌봄기획관	3,148,219	3,149,409	3,056,293	3,052,224	10	4,059	99.9%
어르신복지과	3,073,761	3,074,900	2,981,050	2,977,159	10	3,881	99.9%
고독대응과	38,206	37,593	39,651	39,618	0	33	99.9%
돌봄복지과	35,104	35,863	35,139	35,005	0	134	99.6%
1인가구지원과	1,148	1,053	453	441	0	11	97.4%

나. 세입예산 집행 점검

- 복지실 소관 '24년도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20% 이상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 납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 비율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633,000	1,463,000	1,463,000	8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자립지원과) 송전선로 통과 토지점용료를 '기타사용료'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는 '공유재산임대료'로 부과하여 과납액 발생 ◦ (어르신복지과)시립승화원부대시설 신규업체 낙찰에 따른 임대료 수입증가 	131%
216-06 기타 이자수입	1,063,000	2,603,000	2,538,000	1,47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139%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 납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 비율
216-04 불용품 매각대금	43,000	66,000	64,000	21,000	(장애인자립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 매각 예상금액(1대 당 1,400천원) 대비 실제 매각금액(1대 당 2,030천원) 간 차이 발생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시설 폐지 등의 사유로 예상치 못한 불용품(차량, 공기청정기 등) 매각대금 반납 발생 	49%
223-01 시도비 반환금수입	49,031,000	70,365,000	68,493,000	19,46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40%
223-02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9,633,000	5,941,000	5,714,000	-3,91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41%
223-03 위탁비 반환수입	4,097,000	2,222,000	2,222,000	-1,87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46%
224-07 그외수입	5,811,000	10,381,000	10,362,000	4,55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산액 평균치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78%
225-01 지난년도 수입	3,673,000	6,829,000	2,120,000	-1,55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년도 보조금 잔액, 발생이자 미반납액 등으로 자치구 추정 미편성 등으로 부족 수납 	-42%
233-01 변상금	5,000	6,000	1,000	-4,000	(어르신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상금 부과대상 중 미납 	-80%
235-01 부정이익 환수금	0	162,000	99,000	99,000	(장애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계획 당시 편성하지 못했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결정에 따른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및 수납 발생 	100%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3,000	16,000	16,000	-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산액 평균치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100%
715-01 국고보조금 반환금	0	342,000	327,000	32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수납 과정에서 세입 과목 선택 오류로 인한 미편성 세입 과목 발생 및 이로 인한 차이 발생 	100%

-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계속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과,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수입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단순한 자원 또는 회계 조작상의 수입 등을 포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복지실의 '24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20% 이상 차액이 발생한 과목 가운데 기타이자 수입(139%), 시도비반환금수입(40%),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41%), 위탁비반환수입(△46%) 등은 세외수입 추계와 실제 보조금 정산 후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철저한 세입 추계가 필요함.
- 세외수입은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세계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수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23년 「지방재정법」 시행령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첨부이 의무화 되는 등 세입여건의 분석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음.
- 또한, 복지실 '24년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지난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쟁액 대비 과부족액이 다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4,709,000천원, △69%). 지난년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부과한 세외수입 중 당해연도에 징수한 세외수입으로, 복지실 '24년도 지난년도 수입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표> 2024 회계연도 복지실 지난연도 수입 상세 내역

(단위: 원)

부서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내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434,885,000	90,910,090	88,322,190	2,587,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보조금 발생이자 ◦ 3.1운동 100주년 공모사업시비반납이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비발생이자, 환수금 및 과오청구 반환금 ◦ 참전명예수당 환수금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206,748,240	69,880,290	136,867,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 위반과징금 채납 내역
장애인복지과	101,261,000	1,258,098,980	77,439,010	1,180,659,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강원 보조금 환수건 등
장애인자립지원과	831,110,000	704,076,330	628,684,120	71,579,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사비보조금 발생이자
자활지원과	587,292,000	85,813,040	49,821,490	35,99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노숙인 희망프레임사업 집행부적정 등보조금반환이자 3,186,190 ◦ 2019년 노숙인 희망프레임사업 집행부적정 등보조금반환명령 29,479,400 ◦ 2018년 노숙인 일자리사업 이자 14,820 ◦ 2021년 자활장려금 집행잔액 1,999,500 ◦ 소송비용 1,311,640
어르신복지과	1,330,382,000	4,179,094,530	908,268,460	3,260,334,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장사시설 이용요금 (관라비, 재사용료) 채납 등
고독대응과	-	34,330	-	34,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운영비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부서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내역
돌봄복지과	387,678,000	302,018,550	297,422,640	4,595,910	◦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보조금 발생이자 등
1인가구지원과	84,000	663,380	658,050	5,330	◦ 1인가구지원센터 보조금 반납액

- 이 가운데 미수납액이 높은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거주시설 인강원 인건비 부정수급 건으로, 2014년 최초로 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를 하였음.
- 인강원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환수 처분액이 10억 2,7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해당 금액에 대한 납부는 최초 처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보조금 환수는 법적 의무이자 행정기관의 제정통제 기능의 핵심임.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 환수가 유예상태인 것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통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과년도 체납분(지난년도 수입)의 적극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간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보다 과년도 부과분의 체납액 규모가 약 2.6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일단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난년도 수입으로 이관되고 나면 그 부과·징수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음.²⁾

2) 오나래(2022).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 세외수입의 편성에 있어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 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격차가 최소가 될 경우 예산액 상의 추계가 보다 더 면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용한 세출 재원의 확보로 이어지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집행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다. 국고보조금의 과소(대) 또는 미교부 사례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23년 예산 기준, 전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83.1조원의 69.4%인 57.7조원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며, 이 중 57.8%가 국민기초보장, 기초연금 등 10개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³⁾
- '25년 기준 서울시 복지실의 전체 사업 221개 중 97개(6,813억 6천2백만원)가 전액 시비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금과의 매칭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내시액의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 사례는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사장을 막고 재원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변경을 방지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실 24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의 과교부 및 미교부 사례는 다음 표와 같음.

3) 정홍원 외 (202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 기준의 타당성 분석과 재원 분담구조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4년도 복지실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1,388,161,838	937,609,311	450,552,527	13,747,498,03	924,197,276	4,505,52,527	△13,412,035	보건복지부 국비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일부 감액(변경내시)
2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501,760	250,880	250,880	467,010	216,130	250,880	△34,75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24.7.23.)
3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	27,644,096	13,822,048	13,822,048	27,404,911	13,582,863	13,822,048	△239,185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4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175,843	45,829	130,014	158,628	28,614	130,014	△17,215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수당-기초	30,928,999	18,186,266	12,742,733	30,728,999	17,986,266	12,742,733	△200,00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24.11.5.)

연 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6	장애인 자립 지원과	중증장애인 연금	166,897,282	98,758,318	68,138,964	166,737,282	98,598,318	68,138,964	△160,00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24.10.8.)
7	장애인 자립 지원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537,762	268,881	268,881	53,1081	262,200	268,881	△6,681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24.8.19.)
8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복지 시설 설치 지원	2,181,786	618,215	1563571	2,091,597	528,026	1,563,571	△90,189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건립사업 관련 광진구에서 사업보류(사업부지 재검토) 를 결정하여 예산 미수령
9	어르신 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3,271,508,133	2,919,597,943	351,910,190	3,178,099,782	2,826,189,592	351,910,190	△93,408,351	수급인원 추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감액 변경 내시 통보
10	돌봄 복지과	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	5,770,282	58,000	5,712,282	5,769,282	57,000	5,712,282	△1,000	확정내시 변경

-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중 불용률 43.4%는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사업이 보류되어 교부되지 않아 발생함.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건립은 광진구에서 사업부지 재검토를 결정하였음.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	602,874	341,114	261,760	43.4%

-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건립사업은 총 1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부지매입을 위해 구에서 55억을 부담예정인 사업임. '24년 사업부지 선정 및 매매 계약 체결이 완료 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기본계획수립 용역 부터 실시되어야 할 상황으로 부지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이 '25년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시 투자심사가 '26년 추진될 예정임.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추진 현황

- 위 치 : 광진구 자양2동 678(346.11㎡, 시유지)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내용 : 노인요양시설(25명) 및 데이케어센터(41명) 건립
 - 사업기간 : 2023 ~ 2026
 - 규 모 : 연면적 515.7㎡(지하1층, 지상4층)
 - 소요예산 : 121억원(국비 9억, 시비 47억, 구비 55억)

구 분	합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
사업비	121억	50억	4억	1억	1억	55억
비 고		국비 9억 확보				구 부담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현재 예정지



2 세출 결산 검토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복지실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조 6,938억 5천 9백만원이며, 이 중 8조 4,804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0억 3천1백만원(불용률 2.3%)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복지실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98% 수준으로 나타남.

<표> 복지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4년도	8,693,859	8,701,140	8,480,426	6,727	15,956	198,031	2.3
2023년도	8,071,163	8,104,571	7,903,730	7,281	8,327	185,233	2.3
2022년도	7,836,944	7,856,988	7,711,568	22,251	13,719	109,450	1.4

- 복지실 '24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과는 돌봄복지과로 전체 예산 5,447억 4천 6백만원 가운데 5,430억 6천 4백만원을 집행해 99.7%의 집행률을 보였고,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과는 디딤돌소득과로 전체 예산 228억 2천 1백만원 가운데 220억 3천 3백만원을 집행해 96.5%의 집행률을 보임.

- 디딤돌소득과의 경우 전체 예산규모가 적어 집행률이 낮아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과는 어르신복지과로 전체 예산 3조 6,950억 9천 1백만원 가운데 3조 5,843억 4천만원을 집행하고 1,102억 6천 1백만원이 불용(집행률 97%)된 것으로 나타남.

<표> 2024년도 복지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 D)	집행률 (B/A)
복지기획관	4,368,984	4,373,354	4,265,764	6,234	15,956	85,400	98.0
복지정책과	2,496,567	2,496,567	2,453,316	18	7,240	35,993	98.6
디딤돌소득과	22,821	22,821	22,033	0	0	789	96.5
장애인복지과	255,626	255,713	240,888	901	5,241	8,683	96.6
장애인자립지원과	1,298,452	1,302,735	1,259,157	4,970	3,475	35,134	97.3
자활지원과	295,518	295,518	290,371	345	0	4,803	98.4
돌봄고독정 책관	4,324,876	4,327,786	4,214,662	493	0	112,631	97.4
어르신복지과	3,692,100	3,695,091	3,584,340	487	0	110,262	97.0
고독대응과	81,899	81,899	81,255	0	0	644	99.2
돌봄복지과	544,746	544,746	543,064	0	0	1,682	99.7
1인가구지원과	6,051	6,051	6,003	6	-	42	99.3

- 어르신복지과의 불용액이 높은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전체 예산 3조 2,715억원 가운데 1,048억원이 불용 된 것으로 집행률은 96.8%임.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해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이하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4년 기준 서울시의 수급인원은 총 976,470명으로 수급률은 54.05%로 나타남.

- 복지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4)에 따라 설치된 급여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세입,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동 조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조 7,903억 6천4백만원 가운데 1조 5,949억 5천2백만원을 집행해 98.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24년도 복지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업 현황

(천원, %)

사업명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집행률)
합계		1,790,363,985	1,769,096,651(98.8%)
의료급여사업	복지정책과	1,790,196,331	1,768,928,997
보전지출(국고보조금 반환)		167,654	167,654

-
- 4)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5)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1조6)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동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③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④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⑤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음.
- '24년도 복지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 159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158억 1천 6백만원(99.3%)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년도 복지실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현황

사업명	담당부서	예산액(천원)	집행액(집행률)
합계		15,929,500	15,815,493(99.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정책과	11,261,500	11,167,350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522,500	1,502,643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 사례관리비	돌봄복지과	3,145,500	3,145,500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6)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표> 복지실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4년도	1,806,293	1,806,293	1,784,912	0	84	21,297	1.2
2023년도	1,930,801	1,930,801	1,596,818	0	0	333,983	20.9
2022년도	1,754,156	1,754,242	1,685,822	0	0	68,421	4.1

나. 예산의 변경사용

1) '24 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 예산변경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신축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재정법 제47조⁷⁾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임.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변경,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의 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의 결정으로 사용하는 것임.

7)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의 변경으로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시행하게 됨.

○ 복지실 '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24년도 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32건	19건	33건
승인금액	-	1,737	2,038	92,700

<표> 2024년도 복지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1건	1건	-
승인금액	-	1	1,470	-

-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총 32건(17억 3천7백만원), 예산변경은 총 19건(20억 3천8백만원), 이체는 총 33건(927억원)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총 1건(1백만원), 예산변경 총 1건(14억 7천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24년 7월 1일자로 실시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이체로, 주요내용으로는 돌봄·고독정책관(3급)이 신설되면서 일부 부서(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고, 여성가족실 산하였던 1인가구담당관이 돌봄·고독기획과 산하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예산조치임.

가)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4년도 복지실의 예산 전용 건수와 금액은 총 33건, 17억 3천 8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2024년도 복지실 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	복지 정책과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51,400	6,000	-	2024-09-23	579,900	78%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확정 예 산에 포함된 운영비 를 편성하기 위함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	6,000		5,488	91%	
2	복지 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31,796	1,500	-	2024-10-14	2,409,204	85%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구성, 운 영 등을 위한 예산 전용
		보훈단체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	1,500		424	28%	
3	복지 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90,296	58,500	-	2024-10-11	2,409,204	85%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구성, 운 영 등을 위한 예산 전용
		보훈단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9,500	-	58,500		166,233	99%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4	복지 정책과	보훈단체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508,000	11,950	-	2024-08-26	1,496,050	100%	4·19 관련 3개 단 체의 사무실 관리비 용 지원
		보훈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835,230	-	11,950		847,180	100%	
5	복지 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영	306-01 출연금	9,910,000	15,670	-	2024-12-16	8,769,621	89%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평가 결 과 통보 및 증액내시 에 따른 세출예산 전 용
		의료급여 관리사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66,470	-	15,670		3206540	98%	
6	복지 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영	306-01 출연금	9,970,000	30,000	-	2024-09-20	8,769,621	89%	서사원 청산 관련 법 률 관리비용 증대, 돌 봄서비스 공공성 강 화계획 홍보, 서사원 백서 제작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	-	30,000		72,288	8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7	복 정 책 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306-01 출연금	10,000,000	30,000	-	2024-07-08	8,769,621	89%	서울특별시 사회서비 스원 청산에 따른 행 정 관리비용 증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	30,000		72,288	80%	
8	복 정 책 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306-01 출연금	9,940,000	30,000	-	2024-11-19	8,769,621	89%	안심돌봄120 사업 홍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0,000	-	30,000		72,288	80%	
9	복 정 책 과	사 회 보 장 위원회 운영 지	202-03 국외업무여비	55,000	902	-	2024-12-20	9,337	17.2%	'24년 7월 조직개 편으로 7과에서 9과 로 확대됨에 따라 관 리 인원이 증가(7명 → 8명)하여 기존 예 산 잔액으로 12월 보 수 및 보험료 지출 불가
		사 회 보 장 위원회 운영 지	101-04 기간제근로 자 등보수	55,142	-	902		55,878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0	복지 정책과	서울시복지 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72,143,520	10,000	-	2024-07-31	71,033,520	98%	사회보장 제도 보고 서 발간을 위한 예산 전용
		사회보장 위원회 운영 지	201-01 사무관리비	128,663	-	10,000		131,591	95%	
11	복지 정책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94,708	904	-	2024-12-16	65,912	70%	보건복지부 증액 내 시 통보에 따른 세출 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97,502	-	904		98,406	100%	
12	디딤돌 소득과	안심소득 시 범사업 추진 체계 구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27,100	4,000	-	2024-07-22	120,593	98%	안심소득 네이밍 공 모전 당선작 시상금 수여
		안심소득 시 범사업 추진 체계 구축·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	-	4,000		4,000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3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애 인 공 동 생활가정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3,473,933	11,810	-	2024-07-10	2,443,819	74%	서대문 피해장애인쉼 터 이전 공사범위 확 장에 따른 건축공사 고용개선비 반영 및 감리용역 추가
		인 권 침 해 장애인 쉼터 운영(시비)	401-01 시설비	515,000	-	11,810		109,319	20%	
14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애 인 공 동 생활가정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3,462,133	7,000	-	2024-07-10	2,443,819	74%	서대문 피해장애인쉼 터 이전 공사범위 확 장에 따른 건축공사 고용개선비 반영 및 감리용역 추가
		인 권 침 해 장애인 쉼터 운영(시비)	401-02 감리비	-		7,000		3,300	47%	
15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애 인 공 동 생활가정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3,384,635	6,460		2024-10-15	2,443,819	74%	건축공사비용 상승으 로 설계용역 공사비 산출내역에 따라 부 족분 발생하여 예산 전용
		학 대 피 해 장 애 아 동 쉼 터 운	401-02 감리비	-	-	6,460		-	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6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애 인 공 동 생활가정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3,455,123	70,488	-	2024-10-10	2,443,819	74%	리모델링 설계 용역 에 따른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공사 추 진을 위해 감리용역 비용 예산 전용
		학대 피해장 애아동쉼터 운영	401-01 시설비	401,980	-	70,488		78,633	17%	
17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애 인 공 동 생활가정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3,332,411	49,625	-	2024-12-23	2,443,819	74%	2024년 장애인거주 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에 따른 시비매칭
		장 애 인 거 주 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364,638	-	49,625		463,780	100%	
18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애 인 공 동 생활가정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3,378,175	45,764	-	2024-10-25	2,443,819	74%	2024년 장애인거주 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에 따른 시비부족분 확보
		장 애 인 거 주 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318,874	-	45,764		463,780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9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애 인 활 동 지 원 사 업 - 활 동 지 원 운 영	308-01 자치단체 경 상 보 조 금	1,573,688	56,800	-	2024-05-09	1,316,082	87%	2024년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지도·점검 시 노무 전문가 참여 를 위한 전문가 자문 수당 확보 필요
		장 애 인 활 동 지 원 사 업 - 활 동 지 원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	-	56,800		54,388	96%	
20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쉼 터 조 성 및 운 영	308-01 자치단체 경 상 보 조 금	264,728	13,890	-	2024-12-23	225,844	90%	2024년 11,12월 장애인복지카드 등기 배송료 지급
		장 애 인 복 지 카 드 윈 스 톱 발 급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240,660	-	13,890		254,550	100%	
21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복 지 관 운 영	307-05 민간위탁금	25,475,258	272,000	-	2024-08-01	24,987,369	99%	시립서대문농아인복 지관 별관 건립사업 전용(설계변경 등에 의한 추가예산 소요)
		시 립 서 대 문 농 아 인 복 지 관 별 관 건 립	401-02 감리비	1,041,000	-	272,000		1,312,993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2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복 지 관 운 영	307-05 민간위탁금	25,611,258	136,000	-	2024-08-01	24,987,369	99%	시립서대문농아인복 지관 별관 건립사업 전용(설계변경 등에 의한 추가예산 소요)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401-01 시설비	6,109,000	-	136,000		6,245,000	93%	
23	자 활 지 원 과	노숙인 자활 시 설 운 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7,902,439	55,000	-	2024-03-29	7,134,496	91%	시설 이전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추진
		거 리 노 숙 인 보 호	401-01 시설비	-	-	55,000		53,350	97%	
24	어 르 신 복 지 과	저소득 어르신 급 식 제 공	301-02 사 회 보 장 적 수혜금(취약 계층, 지방재원)	570,484	40,000	-	2024-12-20	300,200	57%	서부노인보호전문기 관 장소이전 및 개보 수비용 증액
		노인보호 전문 기 관 운 영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70,000	-	40,000		110,000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5	어 르 신 복 지 과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 보조자원)	216,112,399	80,354	-	2024-04-11	216,032,045	100%	토지인도 소송 관련 강제조정 확정에 따 른 토지매수대금 등 의 지급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00	-	80,354		82,354	100%	
26	어 르 신 복 지 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 계층, 지방자원)	598,250	27,766	-	2024-11-06	300,200	57%	2024년 서울밥상 시 범사업 민간기업 활 용형 추진을 위한 용 역비 관련 등 예산 전용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1,000	-	27,766		1,000	3%	
27	어 르 신 복 지 과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5,000	5,000	-	2024-10-25	-	-	시니어일자리박람회 업무가 시니어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용(어르신일 자리 활성화 예산전 용 계획, 어르신복지 과 - 9 4 2 4 호 , 2024.10.24.)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95,850	-	5,000		293,699	62%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8	어 르 신 복 지 과	어르신일자리 활 성 화	201-03 행사운영비	170,000	170,000	-	2024-10-25	-	-	시니어일자리박람회 업무가 시니어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용(어르신일 자리 활성화 예산전 용 계획, 어르신복지 과 - 9 4 2 4 호 , 2024.10.24.)
		어르신일자리 활 성 화	308-13 공 기 관 등 에 대한경 상 적 위탁사업비	300,850	-	170,000		293,699	62%	
29	어 르 신 복 지 과	저소득 어르신 급 식 제 공	301-02 사 회 보 장 적 수혜금(취약 계층, 지방재원)	618,250	20,000	-	2024-10-28	300,200	57%	폐지수집 어르신 안 전보험 가입 지원
		어르신일자리 활 성 화	201-02 공공운영비	-	-	20,000		19,400	97%	
30	고 독 대 응 과	어르신주거 복지시설운영 (양 로)	307-10 사 회 복 지 시 설 법 정 운 영 비보조	3,862,277	20,000	-	2024-11-15	3,521,919	92%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 및 어르신돌봄 추진을 위한 사무관 리비 지출요구
		어르신주거 복지시설운영 (양 로)	201-01 사무관리비	-	-	20,000		20,000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31	돌 복 지 과	종합사회복 지 관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200,000	200,000	-	2024-12-24	-	0%	노인특화운영비 미래 복합형 교육 체험공 간 설치비로 전용
		종합사회복 지 관 운영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	200,000		240,000	100%	
32	돌 복 지 과	종합사회복 지 관 운영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5,403,820	250,000	-	2024-09-25	94,486,764	99%	종합사회복지관 사례 관리 시스템 발주기 관 변경
		종합사회복 지 관 운영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388,000	-	250,000		637,000	100%	
33	복 정 책 과	의료급여사업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765,609,431	1,000	-	2024-11-01	1,745,587,860	99%	복지부 기초의료보장 과 -5822(2024.10.1 1.)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통계목 간 예산 액 조정
		의료급여사업	202-01 국내여비	9,000	-	1,000		9,982	100%	

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 2019년 서울시에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을 시작함. 그러나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2022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서도 시의회 지적과 유사하게 공적책임 미흡 및 비효율적 운영 등이 지적됨.
- '24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 통과됨. 이에 따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해산이 결정되고, '24년 3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⁸⁾에서 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됨.
-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24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24년도 6월까지 집행하고, 청산필요경비 지급 후 11억 2,471만원을 최종 불용처리함(불용률 11.3%).
- '24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100억 원이었으며, '24.5월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됨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잔여출연금 중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3건, 9천만원) 청산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24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후 출연금 전용현황

전용통계목	전용금액 (단위: 천원)	예산전용승인일	비고
출연금→ 사무관리비	30,000	2024.07.08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청산에 따른 행정관리비용

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0호. 「2024년도 3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2024.08.01.)

전용통계목	전용금액 (단위: 천원)	예산전용승인일	비고
	30,000	2024.09.20.	· 사회서비스원 청산관련 · 법률관리비용 증대, 돌봄서비스 · 공공성 강화계획 홍보, · 사회서비스원 백서 제작 등
	30,000	2024.11.19.	· 안심돌봄 120 사업 홍보

-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백서 제작을 위한 비용 중 1,771만원은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남.

- 청산과정에서 출연금은 인건비성 경비(퇴직금 부족액, 퇴직위로금) 와 운영비(소속기관 임대료, 폐업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해산 당시 종사자 총 325명 중 318명(98%)이 퇴직위로금⁹⁾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관련 경비 집행은 청산에 따른 법률문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청산인 임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청산 중 법인으로 전환되어, 청산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관련한 절차는 필수 절차를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잔여재산 정산 및 법인 말소 등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9) 신청인 본인의 기본급 기준 3개월 분 급여

-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 온 돌봄 관련 사무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필수 공공서비스로, 해산 과정에서도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지적들을 반영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에도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8,7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 돌봄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②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¹⁰⁾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센터임.

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4년 기준 서울시에는 권역별로 총 4개의 보조기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4명(정규직)의 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현황

센터명	위탁법인	관할 자치구	인력	위탁기간(개소일)
동 남	(재)푸르메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6명	'24.7.29.~'27.7.28. ('08.11.)
동 북	(사)한국뇌성 마비복지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6명	'23.1.1.~'25.12.31. ('14. 8.)
서 남	(사)한국뇌성 마비복지회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6명	'23.1.1.~'25.12.31. ('08.11)
서 북	(재)푸르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6명	'24.7.29.~'27.7.28. ('18. 5.)

- '24년 기준 사업예산은 18억 4,642만원이며, 민간위탁금 14억 6백만원과 민간위탁 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사업은 교부사업으로 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설에서 교부받은 민간위탁금에서 반복적으로 운영비를 전용하여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최근 3년간 민간위탁시설 내 보조기기센터 예산 전용승인내역

연도	시설명	민간위탁 통계목	위탁예산액 (단위:천원)	전용금액		예산전용승인 일
				감액 (단위:천원)	증액 (단위:천원)	
2024	서울시동남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279,715		10,000	2024-10-16
		민간위탁금 (운영비)	58,052	10,000		
	서울시서북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284,608		10,000	2024-10-16

연도	시설명	민간위탁 통계목	위탁예산액 (단위:천원)	전용금액		예산전용승인 일
				감액 (단위:천원)	증액 (단위:천원)	
	서울시동남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운영비)	67,651	10,000		2024-10-24
	서울시동북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289,715		1,500	
	서울시서북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290,459	15,500		
	서울시서북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294,608		14,000	2024-12-11
2023	서울시동남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253,725	-	11,500	2023-12-11
	서울시서북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운영비)	30,000	11,500	-	2023-12-11
2022	서울시서남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256,339	-	11,381	2022-7-29
	서울시동남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운영비)	30,000	11,381	-	2022-4-26
	서울시서북보조 기기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256,339	-	12,000	2022-4-26

- 예산의 전용은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외로 민간위탁금 내의 전용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서울시에서 발간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서도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되어야 하며, 전용하는 과목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전용에 대해 예산편성 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편성하고 있으나,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편성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지급부족이 상이하게 되며, 이를 센터 운영비에서 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입장임.
- 이는 민간위탁금의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부터 일관된 편성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는 것임. 이는 당초 민간위탁금 교부 목적과도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함으로써 기관의 운영에도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보조기기센터는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침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됨.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춘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게 됨. 또한,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 집행기관에서는 25년도 예산 편성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나)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복지실 '24년도 예산변경사용건수는 총 19건, 20억 3천8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2024년도 복지실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	복지 정책과	서울시복지 재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000	13,983	-	2024-07-23	6,017	100.0%	사회보장 제도 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 변경
		사회보장위원 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4,680	-	13,983		131,591	94.9%	
2	복지 정책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02,200	7,492	-	2024-11-27	65,912	70.2%	조직개편('24.7.)에 따 른 실 인원 확대에 지 급대상 증가(+1관 2 과) 및 승진·복직·부서 이동 등 인사 현황에 따라 추가 소요액 발생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61,200	-	7,492		62,692	91.2%	
3	장애 인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강화	307-10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313,192	176,000	-	2024-10-25	102,200	74.5%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보조금 예산 변경 승인 요청
		장애인지원 주택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8,369,121	-	176,000		8,530,460	99.8%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4	장애인지원 복지과	장애인지원 주택 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00,000	100,000	-	2024-02-01	-	0%	신규 자립생활 주택 확보 시 보조사업자가 아니라 시가 직접 계약 및 보증 금 납부하기 위해 적정 통계목으로 예산 변경
		장애인지원 주택 운영	406-01 기타자본이전	-	-	100,000		99,614	99.6%	
5	장애인지원 복지과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107,241,518	300,000	-	2024-09-13	105,822,901	94.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 터 운영비 부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거주 시설 운영 예산 일부를 변경 사용
		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800,000	-	300,000		12,873,189	98.3%	
6	장애인지원 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501,760	15,020	-	2024-09-04	432,260	88.8%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통보('24.8.12.) 되었으나 우리시 일정상 추 경편성이 어려워 예산변경 을 통해 매칭 시비를 확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307-11 사회복지사 업보조	531,600	-	15,020		546,620	100.0%	
7	장애인지원 복지과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7,000	17,000	-	2024-08-13	-	0.0%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지원사업 보조사 업자 선정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	-	17,000		17,000	10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8	장애인 복지과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0,000	123,000	-	2024-08-13	17,000	100.0%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현금지원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 계층, 지방재원)	-	-	123,000		30,233	24.6%	
9	장애인 자립 지원과	장애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사업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7,644,096	113,579	-	2024-04-24	27,165,726	98.7%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인건비 부족분 마련 위해 장애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 일부 변경 사용
		장애인수어 통역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7,957,437	-	113,579		8,071,016	100.0%	
10	장애인 자립지 원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9,740,424	443,343	-	2024-11-14	6,818,297	73.3%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 른 시비 부담분 예산 확보
		장애수당 -차상위 등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 보조재원)	11,399,529	-	443,343		11,842,872	10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1	장애인 자립 지원과	중증장애인 연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 고보조재원)	166,897,282	15,000	-	2024-12-12	166,166,688	99.6%	12월 서울형 장애인 부 가급여 소요예산 부족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 계층, 지방재원)	14,880,000	-	15,000		14,840,833	99.6%	
12	장애인 자립 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658,000	304,000	-	2024-12-12	27,613,000	94.1%	12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소요 예산 부족
		청소년 발달장 아인 방과후활 동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800,000	-	304,000		13,104,000	100.0%	
13	장애인 자립 지원과	시립발달장애인 복지관 별관 건립	401-01 시설비	2,905,000	38,640	-	2024-12-16	3,589,169	98.7%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 관 건립사업 건설사업관 리용역 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변경
		시립발달장애인 복지관 별관 건립	401-02 감리비	253,000	-	38,640		418,917	10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4	자 활 지 원 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27,291,400	37,720	-	2024-10-25	127,253,680	100.0%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변경내시('24.10.10.)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부족분 발생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2,213,398	-	37,720		12,298,771	100.0%	
15	어 르 신 복 지 과	노인종합 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5,804,474	47,000	-	2024-09-20	35,828,833	99.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 변경 계획
		노인종합 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8,330,943	-	47,000		8,248,448	99.6%	
16	어 르 신 복 지 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2,024,616	14,400	-	2024-10-28	1,841,644	91.6%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4,110,824	-	14,500		4,114,619	99.7%	
17	어 르 신 복 지 과	경로당활성화 및 지원강화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490,642	3,354	-	2024-10-08	12,668,095	93.3%	폐지수집어르신 안전물 품 지원
		경로당 냉·난 방비 및 양곡 비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28,972	-	3,354		3,090,489	1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8	어 르 신 복 지 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01-02 사회보장적수 혜금(취약계 층, 지방재원)	808,250	190,000	-	2024-10-08	300,200	56.6%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 진하는 경로당 냉·난방 비 및 양곡비 지원 확 정내시 변경(증액)에 따라 시비 매칭분 확보
		어르신 일자 리 활성화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76,487	-	190,000		923,834	40.8%	
19	돌 봄 복 지 과	어르신의료복 지시설 운영 (요양)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5,371,334	78,020	-	2024-10-02	4,746,486	89.7%	등급외자 요양보험수가 지원대상 입소자 증가 등 4분기 운영비 부족 액 발생에 따른 예산변 경 사용
		어르신의료복 지시설 운영 (요양)	307-05 민간위탁금	2,479,927	-	78,020		2,557,795	100.0%	
20	복 지 정 책 과	의료급여사업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767,079,431	1,470,000	-	2024-11-01	1,745,587,860	98.9%	의료급여사업-보건복지 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 른 변경 사용
		의료급여사업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8,762,400	-	1,470,000		19,849,180	94.7%	

다) 예산 이월사업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¹¹⁾에서 명시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이월제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나눌수 있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됨.
- 사고이월은 사업 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또는 발주)를 한 후 연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차년도로 넘겨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11)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복지실 24년도 사고이월은 총 12건, 46억 9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4년도 복지실 사고이월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이월사유
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0,000	89,998	72,288	17,71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용역기간 : '24.7. ~ '25.3.)로 당해 연도내 지출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용역비 이월하여 집행 예정
2	장애 주립 자강 인생 활화	201-01 사무관리비	150,000	31,179	11,479	19,700	용역 수행업체 선정 지연으로 컨설팅 수행 기간 및 준공기한을 고려해 이월하여 집행 예정
3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운영(시비)	401-01 시설비	554,220	553,212	109,319	443,893	설계변경, 대수선 해체 허가 등 공사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장하여 이월하여 집행 예정
4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운영(시비)	401-02 감리비	7,000	6,800	3,300	3,500	설계변경, 대수선 해체 허가 등 공사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장하여 이월하여 집행 예정
5	학대 장애 아동 쉼터 운영	401-01 시설비	472,468	455,034	78,633	376,401	현장상황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협의 등으로 공사 발주시기 연기되어 이월하여 집행 예정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이월사유
6	학대 피해 아동 장애아동 상담 운영	401-02 감리비	6,460	6,266	0	6,266	현장상황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협의 등으로 공사 발주시기 연기되어 이월하여 집행 예정
7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도입	201-01 사무 관리비	255,000	252,607	200,967	51,64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용역기간 : '24.7. ~ '25.3.) 로 당해 연도내 지출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용역비 이월하여 집행 예정
8	장애인 복지관 복합 강	401-01 시설비	300,000	264,000	132,000	132,000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당해 연도내 지출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용역비 이월하여 집행 예정 (※ 용역기간 : '24.5. ~ '25.3.)
9	반 다 체 육 센 터 립 건	401-01 시설비	3,345,000	3,345,000	236,000	3,109,000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당해 연도내 지출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이월하여 집행 예정 (※ 공사기간 : '24.11. ~ '26.11.)
10	반 다 체 육 센 터 립 건	401-02 감리비	513,000	513,000	0	513,000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당해 연도내 지출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이월하여 집행 예정 (※ 공사기간 : '24.11. ~ '26.11.)
11	반 다 체 육 센 터 립 건	401-03 시설부 대비	31,334	16,102	16,102	15,232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당해 연도내 지출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이월하여 집행 예정 (※ 공사기간 : '24.11. ~ '26.11.)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이월사유
12	1인가구 사회적 연결 건축 지원	201-01 사무 관리비	21,300	19,922	13,716	6,206	'24년 1인가구 지원사업 우수수기 공모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11.25. ~'25.1.31.)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

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 시립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시설인 시립 곰두리체육센터의 별관으로, '20년 6월 건립계획이 최초 수립됨.

※ 시립 반다비체육센터 사업개요

- 위치 : 송파구 동남로 271 (오금공원내)
- 사업기간 : '20.6월~'26.6월
- 총 사업비 : 25,517백만원
- 건립규모 :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4,109㎡

< 위치도 >



< 조감도 >



○ 주요경과

- '20. 6월 : 시립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계획 수립
- '21.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동의
- '22. 7월 : 변경계획 수립 (공공건축심의 등 결과 반영)
- '23. 2월 ~ : 설계용역 (도시기반시설본부)
- '24. 8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동의(기준가격 30%이상 변경)

- 해당 건립계획은 '21년 3월 최초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공원위원회 등 각종 심의결과를 반영해 건립규모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표> 반다비체육센터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1.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22.7월) 공공건축심의 결과	(‘24.7월) 설계용역 최종결과
① 건립규모	연면적 3,290.00㎡	연면적 3,690.00㎡	연면적 4,109.29㎡ (증 819.29㎡)
② 총사업비	11,522백만원	19,426백만원	25,517백만원 (증13,995백만원)

- 해당 사업은 사전 인허가절차와 설계변경, 매장문화재 조사 및 교육시설 안정성 평가 등의 진행으로 실착공(‘25.2월)이 늦어져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이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139억 9천5백만원의 증가된 255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국비 40억, 시비 215억 1천7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반다비체육센터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25,517	31	-	132	1,340	3,642	4,718	15,654
시설비	21,925	31	-	132	1,310	3,109	3,991	13,352
감리비	3,500	-	-	-	-	513	712	2,275
시설부대비	92	-	-	-	30	20	15	27

-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는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초기 사업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할 요소로, 결

과적으로 착공 지연, 예산증액, 사고이월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 특히,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기반 마련이라는 그 공공적 목적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에는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요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이행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음.

라) 예산 불용사업

-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됨.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도 일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자치구 및 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신규기관 미선정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복지실 '24년도 사업 가운데 20%이상 불용 사업은 총 14개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실 2024년도 20%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	복지정책과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63,200	63,200	63,200	26,139	41.4%
2	장애인과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709,398	709,398	709,398	318,162	44.8%
3	장애인과	퇴소장애인 자립지원	910,600	910,600	910,600	300,390	33.0%
4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1,800,000	1,800,000	1,800,000	450,000	25.0%
5	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2,990,825	3,062,700	3,062,700	1,562,820	51.0%
6	장애인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455,600	455,600	495,000	102,393	20.7%
7	장애인과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140,000	140,000	140,000	92,767	66.3%
8	장애자립지원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178,140	178,140	178,140	64,202	36.0%
9	장애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4,056,788	4,056,788	4,056,788	1,889,500	46.6%
10	장애자립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187,406	4,681,337	4,681,337	955,762	20.4%
11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2,181,786	2,181,786	4,039,437	969,659	24.0%
12	어르신복지과	공공 실버타운(골드빌리지) 조성	202,250	202,250	202,250	200,000	98.9%
13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	2,937,337	3,147,337	1,641,126	52.1%
14	어르신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	500,003	954,714	954,714	465,653	48.8%

①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자해·타해)를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종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돌봄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에서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또는 중복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하기 어려움.
- '22년 6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에 대한 근거¹²⁾가 명시되었고, '24년 6월 11일자로 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함.
- 해당사업은 주간 그룹 1:1지원서비스, 주간 개별형 1:1 지원서비스, 24시간 개별 1:1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사업이며, 그 가운데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서비스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 사업은 전체 사업예산액 30억 6,270만원 가운데 4억 5천 8백만원을 집행해, 국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고 15억 6,280만원(불용률 51%)의 불용이 발생함.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종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집행기관에서는 복지부에서 내시한 사업량 대비 수행기관의 참여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불용사유를 제시함.

※ 2024년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4시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의미있는 낮활동 지원 및 안전한 주거지원 등 24시간최종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 사업규모 : 정원 30명
- 이용기간 : 최초 3년, 갱신을 통해 최대 5년
- 지원내용 : 낮 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1:1로 지원
 - (낮활동서비스)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의미 있는 낮 활동서비스 제공
 - (주거서비스) 주거 공간 지원 및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 제공시간 : 월~금 (주간)9시~17시/(야간)17시~익일9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24년 예산(안) : 총 3,062,700천원 (국비40%, 시비60%)

-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됨. 집행기관에서는 '24년 4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5월까지 2차에 걸친 수행기관 공모에서 사업준비 미비 등으로 수행기관 선정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 해당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주거서비스 등 충분한 공간확보는 물론 충분한 수행인력 등을 확보해야해 집행기관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그러나, 해당 법률은 2022년 6월에 통과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었으며, 특히 법률 통과전부터 서울시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챌린지2)’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도전행동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춘 측면이 해당 법률개정안의 검토보고서¹³⁾에서도 인용되고 있음.
-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서울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험 등이 있다는 점, 해당 법률의 시행 이후 서비스 시행 전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철저한 사업 설계 및 현장의 법인 및 기관 참여독려 등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년도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접수건수는 255건으로 (이 가운데 선정은 30명), 현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공모에 참여할 사업기관들의 확보를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13) 제395회 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②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지원

- 해당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 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4)에 근거하여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과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노인일자리 사업종류, 대상 및 활동내용

유형	일자리수	참여대상	참여기간	근무시간/ 임금	활동내용 (예시)
노인공익활동지원	69,200개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역연금 수급자*	평균11개월	월30시간/ 월29만원	노노케어, 학교급식, 스쿨존 교통지원
노인역량활용	16,350개	65세이상 (일부 60세)	10개월	월60시간/ 월63.4만원	보육·돌봄·청소년시 설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동체사업단	7,148개	60세이상	연중	사업별 상이	식품,공산품제조, 카페, 택배
취업 지원	2,503개	60세이상	연중	사업별 상이	민간일자리 알선

1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4.11.1. 제정) 총칙(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취업지원, 노인채용기업 창업지원, 공동체사업단설립 운영지원, 노인친화기업 기관지정, 노인친화기업 기관 지정의 취소, 노인공익고활동사업, 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기반조성(노인생산품 판매촉진등,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홍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조사, 참여자 보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 등). 보칙(자료의 요청, 보고와 건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칙 등 총 31조로 구성됨

<표> 노인일자리 사업별 현황

(’25. 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시니어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종합 복지관	자치구	종합사회 복지관	비영리단체 등기타	소규모노인 복지센터
합계	83,476	26,307	16,003	12,179	11,680	8,883	3,879	4,545
노인공익활동사업	소계	62,872	13,946	13,193	9,990	11,194	8,176	4,154
	노노케어	8,530	710	610	2,413	90	2,326	1,027
	취약계층지원	234	38	125	22	-	-	49
	공공시설봉사	53,727	13,110	12,415	7,385	11,104	5,850	2,686
	경륜전수봉사	381	88	43	170	-	-	15
노인역량활용사업	14,278	7,874	2,057	1,691	486	618	1,171	381
공동체사업단	5,849	4,149	753	438	-	89	410	10
취업 지원	477	338	-	60	-	-	79	-

<표>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자리 수	60,421	67,943	76,182	76,000	73,895	76,135	75,830	89,088
참여 인원	59,031	66,617	79,430	81,078	84,895	88,043	88,745	101,200
지원액 (국·시비)	88,645	113,751	149,885	184,745	168,205	181,845	186,845	248,008

구분	성과계획 목표	실적	달성율
2023년	75,830명	88,745명	117%
2024년	89,088명	101,200명	114%

- 해당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매년 일자리와 참여인원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임. 또한 '23년, '24년 성과계획 목표대비 실적이 114%에 달하고 있음.

<표> 2024년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추경	전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5,000	-5,000			
	201-03 행사운영비	170,000	-170,000			
	308-13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5,850	175,000	470,850	293,699	177,151
	403-02 공기관등에대 한자본적위탁사업비	390,000		390,000	269,278	120,722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076,487	190,000	2,266,487	923,834	1,342,653

- 시니어일자리박람회 업무가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예산인 사무관리비 5,000천원과 행사운영비 170,000천원 전액이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되었으나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개원이 지연되어 일자리 박람회가 미추진됨. 관련 예산을 포함해 177,151천원이 미집행됨.
-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사무 및 운영공간 조성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90,000천원을 추경하였으나 기존 자산을 활용하여 30% 미집행 됨.

□ 서울특별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 대행기관 : (재)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대행기간 : 2024.10.14. ~ 2025.12.31. (15개월), 향후 고유사무 이관
- 주요업무 : 시니어 JOB 챌린지 프로그램, 시니어 전용 일자리 플랫폼
신노년 적합 취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 또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노인일자리(중식도우미)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2,076,487천원 추경하고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구비 매칭(50%)이 어려워 59%의 잔액이 발생함
- 노인일자리 지원은 꾸준한 수요의 증가로 사업형태와 지원이 다양화되고 민원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사업임. 이에 사업 방식의 다양화와 예산확보를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자치구의 참여 부진으로 구비매칭이 불가하여 사업이 저조하게 추진됨.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에 따라서 중식도우미 일자리사업비를 추경 편성했으나, 경로당별 운영방식이 차이가 있어 즉시 중식 5일제 시행이 어려워 자치구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됨.
- 추진 예상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방향 개편 등도 고려해볼 측면이 있다 하겠음.

마.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제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3조¹⁵⁾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

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4 회계연도 복지실에서는 별도의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바.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복지실에서는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복지현장과의 소통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을 편성해 교부하고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출연금에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해 편성되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됨.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출연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최근 3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집행잔액
2022	51,958,346	51,958,346	49,398,333	95%	2,560,013

- 15)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도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집행잔액
2023	76,022,567	76,022,567	73,267,352	96%	2,755,215
2024	72,143,520	72,133,520	71,033,520	98%	1,100,000

- '24 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안심소득 급여지급 업무 이관(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 복지실)로 인한 예산감액(△ 113억 6천2백만원)으로 인한 것임.
- 이 외에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복지시설 평가 확대 및 기능보강타당성 사업의 확대(증 4억 5천만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신규 추진(증 6억 8천7백만원) 이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 예산은 일반 연구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와 서울꿈나래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대상자 직접 지급사업 등으로 구성된 기금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결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최근 3년 서울시복지재단 사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최종예산		실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기금회계	일반회계	기금회계
2022	30,354,900	32,388,306	28,405,665 (94%)	28,644,250 (88%)
2023	33,908,147	48,537,611	30,396,028 (90%)	42,124,349 (87%)
2024	35,183,842	47,294,730	30,184,907 (86%)	40,984,749 (87%)

※ 집행액 중 반환금 및 이월액은 제외함

○ '24년도 복지재단 일반사업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아래와 같음.

<표> 서울시복지재단 '24년도 집행률 90%미만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1	서울시 신노년세대 일자리육구 조사연구	53,246	45,832	7,415	86%
2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55,980	48,739	7,241	87%
3	경로당 개방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76,802	52,027	24,775	68%
4	서울시 장애인 복지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28,331	20,892	7,439	74%
5	서울시 복지데이터 통합 관리 및 운영	155,000	129,882	25,118	84%
6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모니터링 개선 및 사업 활성화 방안	50,000	44,161	5,839	88%
7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220,731	170,242	50,489	77%
8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문조사	1,582,730	973,961	608,769	62%
9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연구	28,262	4,498	23,764	16%
10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	16,490	11,157	5,333	68%
11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412,384	366,544	45,840	89%
12	가족돌봄청년 지원	515,765	435,092	80,673	84%
13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	198,873	152,903	45,970	77%
14	고립가구 지원인력 활동 및 역량강화	135,232	85,676	49,556	63%
15	돌봄SOS사업 운영 지원	163,050	143,884	19,166	88%
16	지역밀착형복지관 운영지원	107,491	86,071	21,420	80%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58,764	52,154	6,610	89%
18	공적채무조정 지원 (구 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서비스 강화)	174,860	143,457	31,403	82%
19	법률상담·자문	38,800	34,474	4,326	89%
20	공익소송지원	39,000	24,402	14,598	63%
21	공익활동수행	49,188	39,869	9,319	81%
22	청년 금융역량강화(구 금융취약 청년 재가지원)	387,751	308,744	79,007	80%
23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94,218	181,740	112,478	62%
24	경비	6,859,985	6,042,626	817,358	88%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5	성과급	1,727,481	1,349,906	377,575	78%
26	예비비	1,224,431		1,224,431	-
	-기금-				
27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50,000	2,000	48,000	4
28	기금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3,120	800	2,320	26
29	기금적립금	1,981,710	-	1,981,710	-

- 집행률 저조 사업 가운데 대부분은 연구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반 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저조한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 사업과 ‘고립가구 지원인력 활동 및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부터 신설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사업으로,
 -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 사업은 사회적 고립거부가구 지원, 자치구 고독사예방협의체 운영 지원, 고립가구 발굴·지원 광역자원 개발로 수행됨.
 - ‘고립가구 지원인력 활동 및 역량강화’ 사업은 우리동네돌봄단, 복지통장 등 현장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임.
- 해당 사업은 계약직을 채용해 수행하고 있는데 계약직 근로자들의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관련경비 미집행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연구 사업외에도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추진된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최근 3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신규사업 명	주요사업 내용	사업 집행내역	
			예산	집행액 (집행률)
2022	금융취약청년 재기 성공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 금융취약 청년의 경제적 복귀 및 재기 지원 •내용 : 청년특화센터 설치·운영, 체계적인 재무상담 운영·관리 등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사업 강화 	660,000	616,164 (93%)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위기대응 •내용 : 고독사 고위험 가구 스마트안부 확인(AI·IoT) 운영지원, 서비스 거부 가구 지원(매뉴얼,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현장 인적 안전망 지원 	498,300	307,367 (61%)
2023	청년자립토대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 금융 취약청년 대상 자립토대 지원 •내용 : 청년 재무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및 교육 	168,000	56,943 (34%)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서비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지원, 심리상담 및 취·창업 지원, 보훈선양 의식 제고 등 	509,600	370,135 (73%)
2024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 가족돌봄청년 돌봄부담 해소 및 미래준비 지원 •내용 : 대상자 발굴, 자원 DB 구축, 후원자원 연계, 관계자 역량강화 등 	515,765	435,092 (84%)

- 최근 복지실의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늘어나게 되면서 출연금도 연동되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복지실에서 직접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단순 수탁·집행하는 사업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단, 이로 인해 출연기관이 갖춰야 할 기획력, 정책실험기능, 제안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출연기관은 정책실험 및 시범사업 수행 등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며 수립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시복지재단은 복지실의 예산과 연동된 집행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며 자율적 기획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역할 정립 및 중장기 사업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3 기금 운영 관련

가. 기금운용 결산 총괄

- 복지실에서는 사회복지기금 3개 계정(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과 재난관리기금 1개 계정(구호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803억 3천만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1,855억 7천8백만원)보다 52억 4천9백만원 감소한 것임.

<표> 2024년도 복지실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4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185,578	△5,249	69,351	74,601	180,33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045	87	673	586	12,132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2,572	△763	2,690	3,453	21,81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9,853	△545	518	1,064	9,308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41,108	△4,028	65,470	69,498	137,080

-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는 일반예산과 달리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반면 예산의 변경사용이 용이하여 예산집행에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함.
- 따라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담보될 필요가 있음.

나.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16)에 따라 운영 중이며, '24년 연도말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12,132	12,045	87	
	예치금잔액	642	555	87	
	예탁금잔액	11,490	11,490	-	
운용수입	합계	1,229	1,622	△393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673	638	35	
	전입금	-	-	-	
	보조금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예수금	-	-	-	
	이자수입	500	526	△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이자율 하락)

1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노인교육사업
 9.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분	주요항목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기타수입	173	112	61	
	예탁금원금회수	-	-	-	
	예치금회수	555	984	429	
운용지출	합계	1,229	1,622	△393	
	소 계	587	1,067	△480	
당해 연도 사용 ㉠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585	1,065	△480	
	용자성사업비	-	-	-	
	기본경비	2	2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기타지출	-	-	-	
	예탁금	-	-	-	
	예치금	642	555	87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12,132	12,045	87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642	555	87	
	예탁금	11,490	11,490	-	

- '24 회계연도 집행기관에서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을 사용해 총 6개의 목적 사업에서 5억 8천5백만원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의 집행률은 90.4%이며 23-24년 결산결과 세입이 증가해 예치금은 최종계획 대비 1억 3,611만원이 증액되어 예치금을 포함한 전체 집행률은 106.3%로 나타나고 있음.

<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지출결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지출액 ⑥	지출잔액 ⑥-⑤	집행률 ⑥/⑤	비고
	당 초	최 종 ⑤				
계	1,124,053	1,155,867	1,228,818	△72,951	106.3%	
목적사업비 소계	551,740	646,740	584,923	61,817	90.4%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370,000	370,000	310,736	59,264	84.0%	
어르신 정보화 교육	40,000	40,000	40,000	-	100.0%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 지원	330,000	330,000	270,736	59,264	82.0%	
어르신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109,500	109,500	109,500	0	100.0%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109,500	109,500	109,500	0	100.0%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	72,240	167,240	164,687	2,553	98.5%	
어르신 주거지원	72,240	72,240	70,227	2,013	97.2%	
복지정보 안내소 운영	-	45,000	45,000	-	100.0%	
민간 무료급식 실태조사	-	50,000	49,460	540	98.9%	
예 치 금	569,313	506,127	642,245	△136,118	126.9%	
기 본 경 비	3,000	3,000	1,650	1,350	55.0%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지원은 어르신일자리 사업 가운데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 초기 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됨. 24년 공모심사 결과 당초 목표치보다 자치구의 참여율이 저조해 9개 기관만을 지원하게 되면서 집행률이 82%로 나타남.

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17) 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4년 연도말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22,572	23,982	△1,410	
	예치금잔액	7,410	8,172	△762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예치금 감소
	예탁금잔액	14,400	14,400	0	
운용수입	합계	10,863	16,548	△5,685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2,690	3,483	△793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800	2,466	△666	전세보증금(융자금) 회수시기 미도래 (기본2년, 최장6년)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890	1,003	△113	공금예금 이자율 변동
	기타수입	0	14	△14	2023년 이후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8,172	9,582	△1,410	
	운용지출	합계	10,863	13,066	△2,203

1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분	주요항목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당해 연도 사용 ㉔	소 계	3,453	4,894	△1,441	
	비용자성사업비 (고유목적)	0	0	0	
	용자성사업비	3,445	4,885	△1,440	매물 물색의 어려움, 타 주거사업 중복선정 등으로 계약 포기가구 발생(집행률 46.5%)
	기본경비	8	9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횟수 감소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당해연도 현재액 ㉑+㉒-㉔	예치금	7,410	8,172	△762	
	조성현재액	21,810	22,572	△762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7,410	8,172	△762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예치금 감소
	예탁금	14,400	14,400	0	

- 현재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서는 용자사업인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만을 진행중에 있으며, '24년도 해당사업 예산은 74억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34억 4천5백만원으로 집행률은 46.6%로 나타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09년부터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계정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됨.

<표> 장애인전세주택 연도별 추진실적 누계

(단위: 가구, 백만원)

연 도	계	~'15 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가구수	754	569	19	17	20	18	24	16	21	29	21
지원액	48,020	26,712	952	1,185	1,500	1,750	3,162	2,276	2,323	4,715	3,445
지원액 (1가구 당)	-	~85	85~ 95	95~ 105	100~ 120	120~ 150	150~ 160	160~ 170	170~ 180	190~ 200	190~ 200

- 다만, 기금운용사업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금액을 2인 이하 가구 기준 2억 2천(3천만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기준 2억 3천(3천만원 증액)으로 상향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어 올해 사업 집행 후, 사업 집행률 등을 반영해 사업 개선방향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음.

라.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¹⁸⁾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1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12.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9,854	8,306	1,548	
	예치금잔액	5,434	3,886	1,548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
	예탁금잔액	4,420	4,420	0	
운용수입	합계	5,952	6,344	△392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518	2,458	△1,940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09	2,060	△1,951	융자금 환수액 감소 : 전세점포 '23.8개소 256백만원 → '24.3개소 75백만원 / 매입임대 '23.84호 1,765백만원 → '24.1호 16백만원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404	388	16	정기예금 45억(10억·5억 각 3건) (재)가입 등에 따른 이자 증가
	기타수입	5	10	△5	서울광역자활센터 실 집행잔액 감소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5,434	3,886	1,548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
운용지출	합계	5,952	6,344	△392	
당해 연도 사용 ㉢	소 계	1,064	911	153	
	비용자성사업비 (고유목적)	643	604	39	서울광역자활센터 자활기금사업 예산 증가
	융자성사업비	418	305	113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신청 증가 : '23. 9개소 305백만원 → '24.11개소 418백만원
	기본경비	3	2	1	자활기금심의위원 수당, 기타 기금사업 인쇄비 등 관련 집행액 증가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구분	주요항목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사유(상세허)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4,888	5,433	△545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예치금 감소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9,308	9,853	△545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4,888	5,433	△545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예치금 감소
	예탁금	4,420	4,420	0	

- 집행기관에서는 '24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을 활용해 총 6억 4,27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자성 사업 5개의 집행률은 100%, 용자성 사업 1개의 집행률은 67.9%로 나타나고 있음.

<표> '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지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지출액 ④	집행률% ④ = ④/③	비고
	당초	변경⑤			
총 계	5,916,463	5,929,807	5,951,782	100.4	
비용자성 사업비 (서울 광역 자활 센터)	소 계	642,780	642,780	100.0	
	자활종합경영 지원사업	80,000	80,000	100.0	경영컨설팅, 시설장비 등 지원
	자활교육훈련	114,270	114,270	100.0	종사자·참여자 교육 훈련 실 시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28,570	328,570	100.0	서울형 자활 사 업 자활사업단(자 활기업) 등 지 원
	자활유통활성화	59,000	59,000	100.0	공공장터 추진, 관로개척 등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대사업	60,940	60,940	100.0	자활사업 현황 조사 연구

구 분		2024년 예산		지출액 ㉔	집행률% ㉕ = ㉔/㉖	비고
		당초	변경 ^㉗			
						보고서 책자 발간 등
용자성 사업비	전세점포 임대자금 용자지원	555,730	615,750	418,370	67.9	임차보증금 지 원 (점포 11곳)
기본경비		5,000	5,000	2,602	52.0	
예치금		4,712,953	4,666,277	4,888,030	104.8	'24년말 시금 고잔액 (결산액 반영)

마.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19)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가 그 목적임.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㉘	전년도이월금	141,108	129,025	12,083	
	예치금잔액	141,108	129,025	12,083	
	예탁금잔액	0	0	0	
운용수입	합계	206,578	340,272	△133,694	
	소 계	65,470	211,246	△145,776	
당해 연도 조성 ㉙	전입금	57,093	52,548	4,545	법정적립금이 자치단체 최근 3개년간 세입결산액에 연동되어 자동인상
	보조금	0	10,111	△10,111	국고보조사업종료

19)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구분	주요항목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5,063	5,449	△386	고금리 기조 완화
	기타수입	3,314	143,138	△139,824	2024 기타수입은 평년수준이며, 2023당시 전년(2022) 대규모 보조사업(코로나 및 집중호우 관련)의 종료 영향으로 일시적인 반환수입 증가가 있었음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141,108	129,025	12,083	
운용지출	합계	206,578	340,272	△133,694	
	소 계	69,498	78,528	△9,030	
당해 연도 사용 ㉠	비용자성사업비(고유 목적)	69,498	78,323	△8,82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종료, 방역물품 지원사업 감액 등으로 인한 세출감소영향
	융자성사업비	0	0	0	
	기본경비	0	205	△205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137,080	141,108	△4,028	보조금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취약계층 냉방비, 난방비 등 대규모 세출사업은 지속하여 연말잔액 감소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137,080	141,108	△4,028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137,080	141,108	△4,028	
	예탁금	0	0	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4년도 집행액은 2,065억 7천8백만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지출 사업액은 이재민 재해보상(384억 7천만원, 집행률 90.8%), 의료 및 구호비 지원(78억 6천3백만원, 집행률 85%),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231억 6천5백만원, 집행률 96.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4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집행액

(단위 : 원)

사업명	세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99,215,965,000	206,578,135,283	103.7
이재민 재해보상	사무관리비	10,000,000	6,150,000	61.5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8,119,013,000	34,830,973,990	91.4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0	6,000,000	100.0
	민간위탁금	786,400,000	759,900,000	96.6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386,255,000	1,300,849,321	93.8
	사회복지사업보조	228,900,000	228,900,00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43,397,000	1,337,472,000	72.6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사무관리비	754,110,000	49,995,430	6.6
	공공운영비	10,220,000	9,840,550	96.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85,409,000	7,803,056,000	92.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민간위탁금	61,600,000	61,200,000	99.4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86,200,000	82,548,460	95.8
	사회복지사업보조	248,370,000	221,854,560	89.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557,604,000	22,799,194,000	96.8
여유자금예치	일반예치금	123,096,173,000	137,080,173,012	111.4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536,314,000	27,960	0.0

바.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

- '24 회계연도 복지실 기금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은 16개로, 당초 지출계획 현액 848억 9천만원 중 745억 8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63억 4천6백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21.7%)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 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미집행액	미집행률	
합계	16	84,890	74,589	-	6,346	21.7	
사회복지 기금	노인복지 계정	6	647	585	-	62	9.6
	장애인복지 계정	1	7,400	3,445	-	-	53.5
	자활계정	6	1,259	1,061	-	198	15.7
재난관리 기금	구호계정	3	75,584	69,498	-	6,086	8%

-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금운영 결과 사업비에서 발생된 불용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용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음.
- 기금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원의 안정화로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 기금이 남설되거나 목적 및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저해할 수 있음.²⁰⁾

- 기금 지출사업예산 편성시에 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출사업예산 이월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효율적 기금운영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 서정섭(2019),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89-111